성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년 월 일
발 의 자 : 도정태의원외6인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권고에 따라 이를 본 규칙에 반영하며, 자치법규 본문에 법령명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뒤에 낫표를 표시하고,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5분 자유발언'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을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함

나. 인용법령 명에 낫표 표시(안 제1조)

다.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의안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 신설(안 제25조제1항)

마.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신설(안 제28조의2)

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안 제70조제1항, 제7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제1,2항, 제82조제1,2,4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사. "제9장 징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개정규칙 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성주군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의회회의규칙”을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로 하고, “회의집행”을 “회의진행”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재적인원”을 “재적의원”으로 하고, “출석인원”을 “출석의원”으로 한다.
제2항중 “2차 투표를 하고 제1항의 득표차”를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로 한다.

제3장 “**의 회**”를 “**회 의**”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의장이”를 “의장은”으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중 “의결한”을 “의결할”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안건에”를 “안건과”로 하고, 제4항중 “제1항과 제3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본회의의 위원회에서”를 “본회의의, 위원회에서”로 한다.

제24조중 “본회의에서”를 “본회의에서는”으로 한다.

제25조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5일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2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제35조제1항중 “의사결정”을 “의사일정”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인정할”을 “인정한”으로 한다.

제64조중 “의회”를 “본회의”로 한다.

제69조제2항중 “허가여부를 토론없이”를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로 한다.

제70조제1항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제4항중 “있을”을 “있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내지 제2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제3항중

“변경하거나”를 “변명하거나”로 한다.

제74조중 “(회의에 질서유지)”를 “(회의의 질서유지)”로 한다.

제81조와 제82조 사이에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징 계”

제82조제1항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제2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제3항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하고, 제4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집행일”을 “집회일”로 한다.

제85조제1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86조제1항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명 성주군의회회의규칙	제명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집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 ---------- 회의진행 ---------- ---------- ---------- ---------- -----.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개회식) ---------- -----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석배정)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제1항의 득표차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④(생 략)	제8조(의석배정) ①---------- ---------- 재적의원 ---- ------ 출석의원 ---------- ------. ② ----------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 ---------- ---------- ---------- ----------. ③~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3장 의 회	**제3장 회 의**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생 략)** ②**의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 **법 제63조제1항** ----------. ③**(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 **의결할** ----------.
제20조(의안의 회부) ①**(생 략)** ②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 부할 수 있다. ③**(생 략)** ④**제1항과 제3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 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생 략)**	제20조(의안의 회부) ①**(현행과 같음)** ②---------- **안건과** ----------. 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과 제2항** ----------. 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 ①----------**본회의의, 위원회에서**----------.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 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4조(번안) --------- **본회의에서는** ----------.
제25조(안건심의) **<신 설>**	제25조(안건심의) **①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5일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③**(생 략)**	②~④**(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2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현 행	개 정
제35조(토론의 통지) ①**의사결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35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 ----------. ②**(현행과 같음)**
제41조(표결방법) ①~②**(생 략)**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생 략)**	제41조(표결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인정한** ----------. ④**(현행과 같음)**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 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 **본회의** ----------.
제69조(사직) ①**(생 략)** ②사직의 **허가여부를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생 략)**	제69조(사직) ①**(현행과 같음)** ②------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 ③**(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생 략)**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79조** -----**윤리특별위원회**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윤리특별위원회**----------. ②**윤리특별위원회** ----------. ③**윤리특별위원회** ----------. ④---------- **있은** ----------.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 ----------. ②----------**윤리특별위원회**----------. ③---------- **변명하거나** ----------.
제74조(회의에 질서유지) (생 략) 1. ~ 6. **(생 략)**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장 징 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법 제86조** ----------**윤리특별위원회** ----------.

현 행	개 정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 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법 제83조**----------.
④제3항의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
⑤**(생 략)**	⑤**(현행과 같음)**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생 략)**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현행과 같음)**
②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행일**로부터 3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집회일**----------.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윤리특별위원회**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